#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034 제출연월일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시·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'보고'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'통보'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2항 중 "보고"를 "통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31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	제31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			
고 등) ① (생 략)	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	2			
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				
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				
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	<u>통보</u>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